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08호

발의년월일 : 2021년 12월 7일
발 의 자 : 신상균 의원
찬 성 자 : 정택진, 임준희,
공기환, 이재식,
조진호 의원 (5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13.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직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다.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서울특별시의원”을 “의원”으로 정비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 타
1) 조 례 안 : 별첨
2) 조례안 예고 : 2021. 12. 8. ~ 2021. 12.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을”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서울특별시의원”을 각각 “의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장”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 2.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후단신설 95.10.1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1. ---------- ------- 의원 ----------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2. ---------- ---- 의원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 략)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 ---------- ---------- ----------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